

우리나라 수도사업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글 · 김종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정부가 수도 민영화 계획이 없음을 누차 밝혔음에도 인터넷 등 매체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 예정인 '물산업지원법'에 관해 동 법의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주장과 추측이 이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실상을 보면, 막대한 세금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50%가 잠자고 있고 해마다 수도사업에서 7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수도관이나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해 땅속으로 새는 수도물이 연간 5천7백억원에 이르며, 노후관망은 수질오염의 가능성을 높여 수도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수도요금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강원도 평창군 주민은 경기도 과천시 주민보다 3배나 높은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물에 대한 낮은 국민 신뢰도입니다. 수도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이 2%도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공성과 경쟁력 높이는 물산업지원법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자체가 직영하는 수도서비스체제에서 오는 낮은 효율성과 전문성 부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수도사업은 164개의 크고 작은 행정구역 단위로 쪼개져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휘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각 지자체간 경쟁이 없어 비용절감과 창의적 경영개선을 위한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수도사업,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체질을 변화시켜 경쟁력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

사실 물산업지원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수도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과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과 서비스 품질의 최적화를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②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 ③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④ 이를 통해 경쟁력을 지닌 물 전문기관을 키우는 것이 진정 물산업지원법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첫째, 수도물의 품질입니다. 상수원 오염물질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먹는 물 기준은 강화되고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정수처리기술이 핵심이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재원 확보가 관건이며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물값입니다. 어떤 생산체제가 가장 비용을 줄이고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해온 문제이며 수도사업 광역화와 전문화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셋째,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품질도 좋지만 무엇보다 요금이 저렴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국가적 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 품질, 가격, 신뢰 등 4가지 경쟁력을 갖춘 전문 수도사업자가 태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내에서 인정받고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섬세한 법안으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지자체가 선택 가능한 여러 유형의 경쟁체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와 같은 직영체제나 인근 지자체와의 연합 방식, 전문기업 위탁경영 방식, 공사나 특수 법인 설립 등의 방식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유형을 택하느냐는 각각의 지자체가 처한 상황과 지역주민의 수요 등 시장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매년 수도사업의 운영효율, 수도요금, 서비스 품질 등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이 몇 배가 오른다는 일부 주장이나 터무니없는 과담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요금은 생산원가를 반영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법안이 제정되어 수도사업이 광역화되고 전문기업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생산원가는 더욱 떨어지고 수도요금은 하향 균등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수도서비스의 책무는 분명 국가와 지자체의 몫이며 수도시설의 소유구조의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금결정과 성과평가에 대한 엄정한 규제도 정부가 할 일이며 저소득 계층이나 농어촌, 도서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운영 관리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민들의 서비스 향상 요구에 유연하고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산업지원법안은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게는 수도서비스 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국민에게는 품질 좋은 수도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며 국가는 경쟁력 있는 물 전문기관 육성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등 시대적 요구와 물 서비스를 둘러싼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 내용을 보다 섬세하게 다듬고 보완하여 여러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오해하고 불신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㉞

